

##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본청 “898명” 을 “918명” 으로, 사업소 “369” 를 “375” 로 한다.

### 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본청의 정책보좌관 정원 11명은 1995년 8월 24일부터, 기타 정원은 1995년 8월 30일부터 각각 적용한다.
- ②(한시 정원) 이 조례에 의하여 증원되는 정책보좌관 정원 중 1명은 1996년 6월 30일까지, 7명은 1996년 12월 31일까지, 3명은 1997년 6월 30일까지 시한부로 하되, 그 기한 이내에 해당 정책보좌관이 퇴직(명예퇴직, 공로연수 발령 포함) 한 때에는 퇴직한 날에 해당 정원이 감축된 것으로 본다.